

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
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269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4월24일
제출자 : 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가.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조직개편('25.1.1.字)으로 정책지원 담당관이 폐지되고 교섭단체 지원업무가 의정담당관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신청 의원의 소속 교섭단체 현안사항 및 교섭단체가 제안하는 토론회에 대한 주관지원부서를 의정담당관으로 함(안 제5조 제2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의회규칙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“정책지원담당관”을 각각 “의정담당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관리) ① (생 략)</p> <p>② 토론회 등에 대한 주관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신청 의원의 소속 교섭단체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: <u>정책지원담당관</u></p> <p>5. 교섭단체가 제안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: <u>정책지원담당관</u>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5조(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<u>의</u> <u>정답담당관</u></p> <p>5. ----- ----- <u>의정담당관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